

## 장학금 지급 규정

1972. 3. 1 제정 1977. 3. 1 개정  
 1981. 3. 1 개정 1983. 3. 1 개정  
 1984. 3. 1 개정 1984. 8.18 개정  
 1986. 1.14 개정 1987. 1. 1 개정  
 1987. 3. 1 개정 1988. 3. 1 개정  
 1988. 9. 1 개정 1989. 3. 1 개정  
 1992.12. 1 개정 1994. 3. 1 개정  
 1994. 9. 1 개정 1996. 3. 1 개정  
 1996. 9. 1 개정 1997. 9. 1 개정  
 2000. 3. 1 개정 2001. 1. 8 개정  
 2002. 3. 1 개정 2002.12. 1 개정  
 2003. 2. 1 개정 2004.10. 1 개정  
 2005. 3. 1 개정 2005. 9. 1 개정  
 2006. 9. 1 개정 2007. 4.27 개정  
 2008. 3. 1 개정 2009. 3. 1 개정  
 2011. 1. 1 개정 2011. 3. 1 개정  
 2012. 3. 1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1 개정 2014. 9. 1.개정  
 2015. 3. 1. 일부개정  
 <학생지원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의 학부, 대학원(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지급자) 교내 각종 장학금의 지급자 수와 금액은 총장이 정한다.

제 4 조 (특별장학금) ①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조 (지급대상) 본교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3.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손)자녀 등
4. 교내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5. 우수 학생선수 및 학생자치단체에서 봉사하는 자
6.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과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
7. 기타 학생처장(교학처장, 각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 2 장 학부장학금

- 제 6 조 (신청 및 지급)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장학금은 등록금고지 시 장학금액을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등록기간 이후에는 장학생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 ③ 해당학기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학자(근로장학생 제외)
  2. 학칙 제7조에서 정하는 수업년한을 초과하는 자(근로장학생 제외). 단, 연속장학생을 제외한 복수전공자의 수업년한은 1년(2학기)을 연장한다. <개정 2013.3.1.>
  3. 학칙에 의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자퇴자 또는 제적자
  5. 장학금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 제 6 조의 1 (충원 및 환수 등) ① 입학성적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 이전에는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순위자로 충원한다. 단, 입학 이후에는 충원하지 않는다.
- ② 장학금 수혜자가 위 제6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 ③ 두(2)학기 이상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받는 연속장학생의 경우 계속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중지된 학기도 지급기간 학기에 포함한다.
- ④ 해외 교환·방문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은 본교 최종학기 성적을 적용할 수 있다.
- 제 7 조 (이중수혜 금지) ① 장학금은 이중수혜를 금지한다. 단, 근로·봉사·재해장학금은 이중수혜를 허용하며, 면학·복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1.>
- ② 교외장학금의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이중수혜 대상이 될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되,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한다.
- 제 8 조 (안암장학금) ① 매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표된 신입생 장학금 안내의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각 대학·학부(계약학과 제외) 입학성적 최우수자 각 1명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 ② 삭제 <2012.3.1.>
- ③ 삭제 <2013.3.1.>
- ④ 장학금은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을 수업년한 동안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학기의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고 성적이 회복되면 다시 지급한다. <개정 2013.3.1.>
1. 평점평균 3.50 미만인 자
  2. 취득학점이 18학점(졸업학점 130인 학과·학부는 17학점) 미만인 자. 단, 7회(공과대학 건축학전공은 9회, 의과대학은 11회) 이후 등록학기는 12학점 미만인 자
- ⑤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한다. 단, 세종캠퍼스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1. 본교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면 2년간 수업료 전액을 계속 지급한다. 단, 의과대학은 제외한다. <개정 2013.3.1.>
  2. 단기유학을 위하여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1년간 경비를 지급한다.
  3. 기숙사에 입사 희망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4.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에 포기하여 차순위자로 충원되었을 경우 충원된 자에게는 본항의 특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전항 제2호의 지급경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 9 조 (크림슨장학금) ① 매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표된 신입생 장학금 안내의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학성적이 각 대학·학부(계약학과 제외) 모집정원 3% 이내인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의과대학은 성적순 13명(수시/정시 포함)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② 삭제 <2012.3.1>

③ 장학금은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을 두(2)학기 동안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14.3.1.>

1. 평점평균 3.50 미만인 자

2. 취득학점이 18학점(졸업학점 130인 학과·학부는 17학점)미만인 자

제 10조 (단과대학장학금) 안암장학금 및 크림슨장학금 선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각 대학·학부(계약학과 제외) 수능성적 최우수자(수시/정시 구분 없이 1명 선발)에게는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을 2학기 동안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1. 평점평균 3.50 미만인 자

2. 취득학점이 18학점(졸업학점 130인 학과·학부는 17학점)미만인 자

제 11조 삭제 <2013.3.1>

제 12조 (신입생우수장학금) ① 매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표된 신입생 장학금 안내의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학성적이 각 대학·학부(계약학과 제외) 모집정원 6% 이내인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삭제 <2012.3.1>

③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의 경우 모집인원의 10%이내인 자에게는 신입생우수장학금을 지급한다.

④ 장학금은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70%를 입학 당해학기(1학기)에만 지급한다.

제 13조 (신입생 면학장학금) 신입생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는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35%를 입학 당해 학기에 한하여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 14조 (미래로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년간 동안 지급한다.

제 15조 (Global KU장학금) ① 국제교환학생 또는 방문학생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국제교환학생 등 교환학생과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Global KU장학금의 종류와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6조 (소망장학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자 또는 장애인인 재학생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는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50%를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년간 동안 지급한다.

제 17조 (과학영재장학금) 매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표된 신입생 장학금 안내의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학성적이 특별전형(과학) 모집인원 50% 이내인 자(계약학과 제외)에게는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50%를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당해 학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3.1.>

제 18조 (특대성장학금) ①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8학점(졸업학점 130인 학과·학부는 17학점, 4학년 1학기 이후는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대학·학부별 성적이 가장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 9. 1.>

② 특대생 후보자가 동일 대학에서 2명 이상일 때는 고학년자로 하고, 고학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총점순으로, 총점이 동일할 때에는 필수(중점)과목 성적순으로

1명을 선정한다.

③ 특대생 장학금은 특대생 수상 직후 1회 지급하며 금액은 수업료 전액으로 한다. 단, 특대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1회 지급받는 것보다 더욱 유리한 교외장학금 수혜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삭제 <2012.3.1>

제 19조 (성적우수장학금) ①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8학점(졸업학점 130인 학과·학부는 17학점, 4학년 1학기 이후는 12학점) 이상이고, 그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수업료 전액, 반액 및 35%로 한다.

② 장학금의 신청은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같음할 수 있다.

③ 장학금 배정은 각 대학·학부 등록금 비율로 하며, 장학생은 해당 대학·학부에서 선발한다.

④ 재입학자 및 편입학자의 입학 당해학과와 복수전공자의 복수전공 개시학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교환·방문학생의 외국 수학대학 성적으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0조 (면학장학금) 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는 소득분위를 기준하여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1.>

② 장학금의 신청은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같음 할 수 있다.

제 21조 (봉사장학금) ① 학생자치활동 부서에서 근로봉사를 제공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으로서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에게는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각종 지역사회봉사 또는 해외봉사 활동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봉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2조 (우수학생선수장학금) ① 체육특기자전형 입학자 또는 우수한 학생선수 중 체육위원장이나 추천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학생선수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3조 (보훈장학금)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외손포함) 또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로서 본교가 정한 입학전형에서 합격한 자에게는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년한 동안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조항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증명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최초 신청에 한함).

제 24조 (복지장학금) ①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과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교의 학비보조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한다.

② 이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 또는 총무처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최초 신청자에 한함).

제 25조 (고대가족장학금) 형제자매가 동시에 본교 학부 또는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부 1인에게는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1.>

제 26조 삭제 <2012.3.1>

제 27조 (근로장학금) 교내 행정업무 보조 등 근로봉사를 제공한 자에게는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28조 (재해장학금) ①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증명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조 (KU 드림장학금) ①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또는 부모 1인 이상이 외국국적인 다문화 가구 학생에게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삭제 &lt;2012.3.1&gt;

제 30조 (한국어연수생장학금) ① 한국어문화교육센터의 한국어 수강자 중 국제어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는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한국어연수생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1조 (국제하계대학장학금) ① 국제하계대학 수강자 중 국제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는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제하계대학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2조 (오픈캠퍼스장학금) 자연계열(의대 제외) 신입생 중 가사가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성북구민 자녀 2명과 동대문구민 자녀 1명에게는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을 4학기 동안 지급할 수 있다.

제 33조 (타이거플라자장학금) ①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그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타이거플라자장학금에 대한 지급 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 34조 (후생복지부장학금) ①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그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후생복지부장학금에 대한 지급 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 35조 (장학단체 또는 교외인사 장학금) 장학단체 또는 독지가 장학금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장 일반대학원, 전문 및 특수대학원 장학금

제 36조 (종류) 일반대학원, 전문 및 특수대학원의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장학금
2. 전문대학원 장학금
3. 특수대학원 장학금
4. 삭제 <2013.3.1.>
5. 교외인사 또는 장학단체 장학금

제 37조 (일반대학원 장학금) 일반대학원 장학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일반대학원 장학금 지급 세칙”으로 정한다.

제 38조 (전문대학원 장학금) 전문대학원 장학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세칙으로 정한다.

제 39조 (특수대학원 장학금) 특수대학원 장학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세칙으로 정한다.

제 40조 삭제 <2013.3.1.>

제 41조 (교외인사 또는 장학단체 장학금) 장학단체 또는 독지가 장학금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특수대학원의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은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199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6조 제3항은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은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1997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신설, 제5조, 제7조2항 개정)
- ② (경과조치) 제7조 제2항은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7조의 4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21조 내지 제23조 신설, 제5조, 제7조, 제8조 개정, 제20조 조명변경, 제7조 내지 제11조와 제14조 내지 제20조, 제24조 내지 제34조 조번호변경)
- ② (경과조치) 제13조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5조 제5호 삭제, 제30조 개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 제24조 내지 제30조, 제38조 신설, 제5조, 제7조, 제8-1조,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 제42조 내용변경, 제11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조명변경, 제31조 내지 제42조 조번호 변경)
- ② (경과조치) 제29조는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제7조 3항 건축학전공은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5조 신설, 제6조 제25호 추가, 제10조 개정, 제16조 4항 추가, 제32조 신설, 제34조 삭제 및 조번호 변경, 제35조 삭제 및 개정, 제36조 신설, 제40조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개정, 제10조, 제12조 신설, 제13조, 제15조 내지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2조 조번호 변경, 제36조, 제43조 내지 제46조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36조 개정, 제38조 신설, 제39조 내지 제42조 조번호 변경)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장학금급여규정’을 ‘장학금지급 규정’으로 규정 명칭을 변경함)
- ② (경과조치) 제8조 제5항 제1호에 대하여 의과대학 대학원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6조 제7호의 ‘학생가장장학금’을 ‘미래로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함, 제26조, 제36조, 제39조 개정, 제40조 삭제, 제41조 내지 제42조 조번호 변경)
- ② (경과조치) 제26조의 개정사항은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1조, 제8조 및 제40조 개정)
- ② (경과조치) 제40조의 개정사항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6조 조 삭제 및 신설, 제6조의 1 조 신설, 제7조 2항,3항 신설, 제17조 조 삭제 및 신설, 제26조 삭제, 제33조 내용변경).
- ② (경과조치) 2012학년도 제2학기부터 제19조(내용변경, 항 삭제 및 신설)와 제20조(내용변경, 항 삭제 및 신설)를 적용하며, ‘성적우수·면학장학금 지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 제9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용 변경, 제11조 조, 제36조 제4호 및 제40조 삭제)
- ② (경과조치) 제8조, 제9조, 제11조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의 1, 제9조, 제17조 내용 변경)
- ② (경과조치) 제9조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8조 ①항]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의 1]